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최영수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현재 서울시는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
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, 이로 인해
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
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목적은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조명기기의 경우
는 LED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등 포함)의
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다양한 조명 설치를
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실내조명기기는 LED제품을 사용하고, 가로등, 보안등, 터널등(지하차도
등 포함)의 경우 고효율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
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